

NIE Issue Report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논의 동향 분석 :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습지

강성룡 국제협력부 부장, 윤지현 국제협력부 차장, 장인영 기후변화연구팀 전임연구원
감수 : 김철구 습지연구팀 팀장



작성 강성룡 / 국제협력부 부장
윤지현 / 국제협력부 차장
장인영 / 기후변화연구팀 전임연구원
감수: 김철구 / 습지연구팀 팀장

NIE Issue Report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논의 동향 분석
: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습지

목차

I. 람사르협약이란?	3
II.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안	6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33

▶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주요논의 동향 분석 내용은 IISD에서 발행한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회의록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I 람사르협약이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은 1971년 이 협약이 체결된 이란 도시의 이름을 따서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www.ramsar.org)으로 불린다. 습지 및 그 자원의 구체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정부 간 협약으로, 1975년에 발효되었다. 사무국은 스위스 글랑에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본부에 있다.



[그림 1] 람사르협약 사무국 - 스위스(Wikipedia)

람사르협약은 3년마다 당사국들이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에서 업무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예산 배정을 논의하며, 다양한 환경 이슈(기존, 신규)에 관한 지침을 심의한다. 제10차 당사국총회는 2008년 한국에서 열렸다.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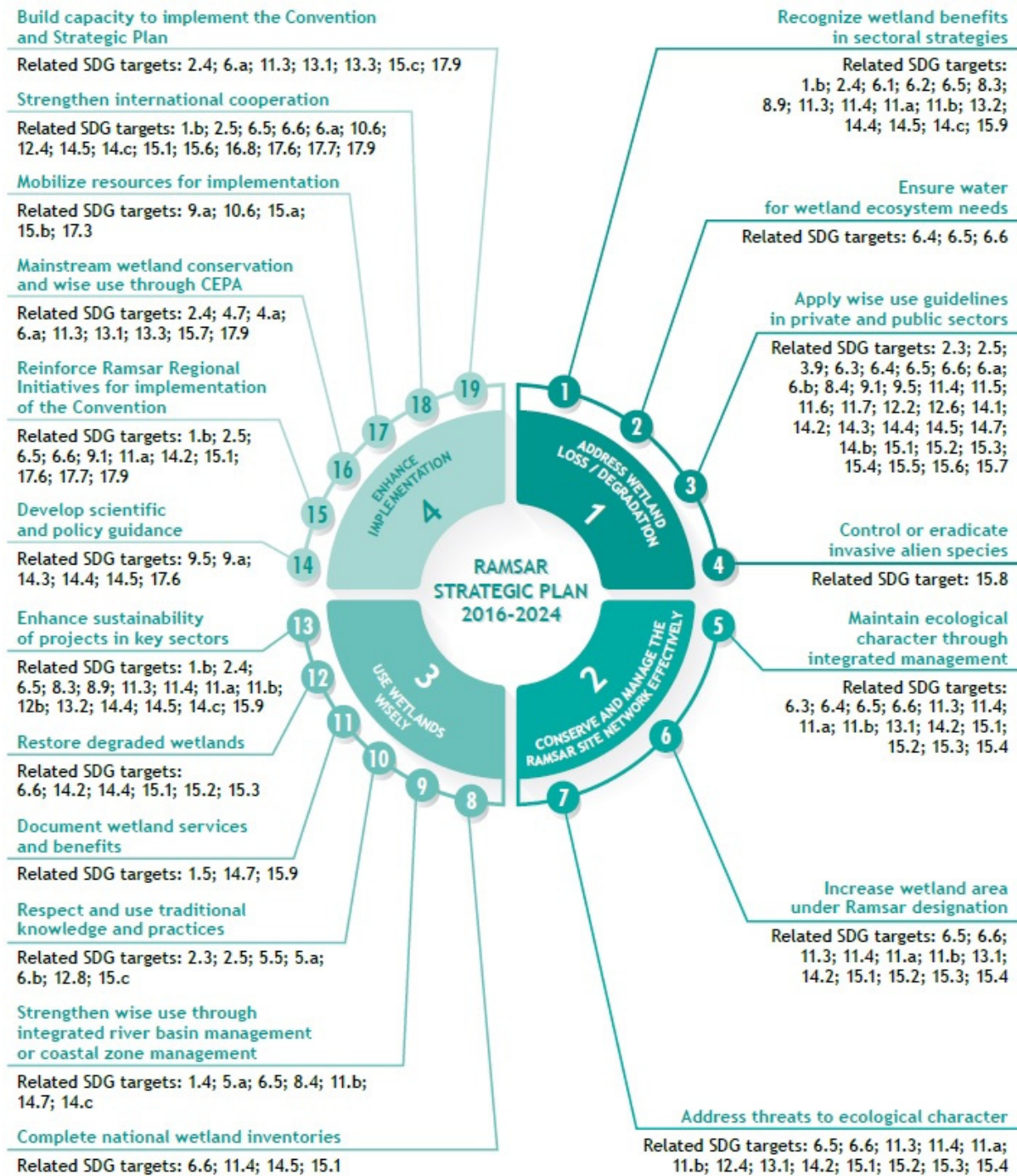
(Standing Committee, 이하 SC)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여 람사르협약 업무와 사무국 활동을 감독하고,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는 총회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로 활동한다. 과학기술검토패널(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 이하 STRP)은 당사국총회, 상임위원회, 사무국에 과학기술적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2016-2024)(The Fourth Ramsar Strategic Plan 2016-2024)’은 2015년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테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Ramsar Convention, 2015).

람사르협약은 “지역·국가 행동과 국제협력을 통해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기여한다”는 람사르협약의 사명을 달성하려면 “핵심 생태계 기능과 그것들이 사람과 자연에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들을 제대로 인식·유지·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2016-2024)’에는 4가지 전략목표- i) 습지의 손실과 질적 저하에 대한 고려, ii) 람사르 습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 iii) 습지의 현명한 이용, iv) 이행 증진- 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략목표는 총 19개 실행목표로 나뉜다.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에서 처럼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유지·복원이라는 주제가 람사르 전략계획에도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습지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들이 협약 사무국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비슷하게, 람사르협약 당사국들도 각 당사국총회 회의 전에 협약 사무국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들은 람사르협약 홈페이지의 국가별 페이지에 게시되며, 협약 실행에 관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또한 사무국은 국가보고서들을 정리하여, 당사국총회에 공식 작업문서(working document)로 제출한다.

습지는 국가 간 국토 경계를 뛰어넘는 생태적·경관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여, 람사르협약 5조는 “당사국들은 의무 수행에 관해 서로 협의해야 하며, 특히 습지가 2개 이상 당사국 영토에 걸쳐 있거나 하나의 수계를 여러 당사국이 공유할 때는 더 그렇다.”라고 규정한다. 공유하는 습지의 관리 같은 공통목표를 가진 당사국들은 람사르협약 “광역 이니셔티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전문가, 정부 간 기구 대표, 람사르 국제조직 파트너, NGO,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다. 람사르 광역 이니셔티브 19개 중에서 2개(Ramsar Regional Centre-East Asia,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가 한국과 관련된다.



[그림 2]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 2016-2024(Ramsar website 2018)

이처럼 습지생태계 관련 최고 수준의 국제적 협약인 람사르협약의 당사국총회가 지난 2018년 10월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개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안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습지생태계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안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총 26개의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1개 결의안(평화와 안전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이 철회되고, 거버넌스에 관한 2개의 결의안(람사르협약의 효과 증대, 협약 구조 및 프로세스 효율 개선)은 1개로 통합되어 총 24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각 결의안별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 하였다.



[그림 3]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IISD ENB 2018)

❖ 람사르협약의 효과 증대와 협약 구조 및 프로세스의 효율 개선

최종 결의안에서 당사국총회(COP)는 인수위원회(Transition Committee)와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프로그램,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언어전략, 자원동원, 그리고 총원에 관한 실무그룹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COP는 이들 보조 기구의 의장들에게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인 57차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이하 SC)에 최종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COP는 현재의 결의안이 업무가 중단 되는 실무 그룹과 관계된 결의안을 대체하며, 이들 그룹의 모든 진행 중인 책임은 SC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COP는 실효성 실무그룹(Effectiveness Working Group)을 설치하며, 공평한 참여 및 관리 가능한 규모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각 람사르 지역과 기타 모든 이해당사자들로부터 SC 대표 한 명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COP는 실효성 실무그룹이 1) 비용 실효성을 포함한 협약의 실효성 분석 및 실효성 향상과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의 제안을 목표로 독립적인 컨설턴트와 함께 협약의 관리 구조를 검토하고 2) 57차 상임위원회(이하 SC57)에서의 프레젠테이션과 보고, 각 SC 회의 및 59차 상임위원회(이하 SC59)에서의 최종 권고를 위해 위임사항을 정하며, 또한 SC의 의사결정을 위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실효성 실무그룹은 COP가 그룹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룹이 그들의 작업을 SC59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현재 확인된 잉여 예산에서 재원을 배정하며, COP14에서 다른 결정사항이 없으면 해체된다.

❖ SC의 책임, 역할 및 구성과 국가의 지역적인 분류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성과와 자원의 관리 및 최적화에서 사무국이 달성한 개선에 만족의 뜻을 표명하고 당사국들과 사무국 사이에 책임을 유지하는 한편 당사국들에 의한 감독의 정상화된 수준을 재설정하기로 결정하며, 2) SC57의 승인을 위해 임원진이 그들의

위임사항을 정하도록 요청하며, 3) 사무국이 신입 회원국들을 위한 준비 브리핑용 도구로서 SC에서 선출된 당사국들의 책임에 관한 부록(Annex 3. Responsibilities of Contracting Parties elected as Regional Representatives in the Standing Committee)을 이용하고, 총회가 시작되는 3년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적절한 때에 협약의 전망 및 기타 MEAs(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다자간환경협약)와의 시너지에 관한 결의안과 결정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된 통합 목록을 SC에게 주지시켜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며, 4)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SC의 신입 회원국들을 추가로 초청하고, 5) 사무국이 가능한 결정사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당사국들과 교섭 하도록 촉구 했다.

결의안의 부록1은 SC의 책임, 역할, 그리고 구성과 협약에 따른 국가들의 지역적인 분류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부록2에는 6개 지역 그룹으로 당사국 및 비 당사국들을 배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3은 SC에서 지역 대표로 선출된 당사국들의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4에는 2018년 이후 및 2019-2021년의 SC 회의에 대한 일정표가 포함되어 있다.

❖ 협약을 위한 언어 전략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6개의 UN공식 언어로 서비스를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2) 당사국들이 가장 중요한 람사르 정보문서를 그들 자신의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것을 권장하며 이것을 람사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국들에게 더 넓은 관련성이 있는 번역된 문서를 사무국에 보내줄 것을 권장하며, 3) 자원의 가용성을 전제로, 협약의 웹사이트에서 번역된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사무국이 비용 효율이 높은 메커니즘을 수행할 수 있게 지시하도록 했다. 부록1은 전략과 일정표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표는, COP 예산 승인을 전제로, COP13부터 COP16(2018~2027) 까지 단계적 절차를 요약하고 있다.



[그림 4] 람사르협약에서 사용되는 언어 예시(Ramsar website 2018)

❖ 재정 및 예산상의 문제

COP는 최종 결의안에서 동결된 예산과 다음의 8개 사항을 채택했다. 1) 예산은 당사국들의 분담으로 조성된 핵심요소 자금을 포함하며, 식별된 우선순위를 위해 사무국은 비 핵심 자원을 추가적으로 찾으며, 2) 부록1에 실린 핵심 예산을 승인하고, 3) 통신, 번역출간, 보고이행, 직원출장, STRP 운영, 기획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19-2021년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2016-2018년 3년간의 핵심 잉여금으로부터 명시된 금액 사용을 승인하며, 4) 사무국이 2019-2021년 3년 기간의 말까지 균형 잡힌 예산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며, 5) 실효성 실무 그룹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잉여금의 사용을 승인하며, 6) 미지급된 분담금이 있는 당사국들이 가능한 신속히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7) 우려와 함께 자발적인 분담금의 상황을 언급하고 당사국 등이 자발적 분담금을 증액 시키도록 권장하며, 8) 사무총장이 발전시킨 사무국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감사하며 사무국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협약 웹사이트의 일부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부록들이 포함되었다. 부록1에는 연간 5백10만 스위스 프랑(CHF)의 2019-2021년에 대한 핵심 활동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기본적인 사무국의 기능이 포함되었다. 부록2는 그 기간에 대한 당사국들의 추정 평가 분담금을 나열하고 있다. 부록3은 총 3백 10만 스위스 프랑(CHF)에 대한 각 3년의 자금 조달 요건과 함께 예산이 책정된 비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추천된 우선순위에 따라 람사르 자문단(Ramsar Advisory Missions), 성(Gender)과 습지, 지역 이니셔티브

네트워크와 센터, 세계 습지의 날, SDG 지표 6.6.1에 관한 보고 목록, 유(有)자격 대표단을 위한 후원, 람사르 CEPA(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대중인식) 프로그램, STRP 업무, 유(有)자격 대표단을 위한 사전 COP14 후원, 언어 전략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제4차 람사르 전략계획(2016-2024)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전략계획과 기타 관련 절차의 검토를 위한 필수 자원으로써 GWO(Global Wetland Outlook, 지구 습지 전망 보고서)의 발행을 환영하며, 2) 제4차 전략계획 검토는 람사르 설립 50주년과 일치하며, 이는 수행 성취와 도전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3) 당사국들이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국가 보고서에 그리고 SC 지역 대표들에게 진척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을 촉구하며, 4) 국가생물다양성관리전략 및 이행계획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s: NBSAPs)과 전략계획의 이행을 맞추도록 NBSAPs를 수립한 당사국들을 격려하며, 5) SC56이 제4차 전략계획의 검토를 수행하도록 전략계획 실무그룹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며 여기에는 모든 람사르 지역의 대표, STRP의 조언이 포함될 예정이며 기타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의 참여를 요청하며, 6)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이기도 한 당사국들이 습지와 그들의 생태계서비스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2020 이후 세계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격려했다.

CEPA 프로그램에 관한 결의안에서는 1) CEP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촉구하고, 국제기구파트너들(IOPs), 기타 기구들, 그리고 수행 파트너들에게 이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며, 2) CEPA 감독 패널이 국가 차원에서 CEPA 문제와 수행 진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CEPA 우선순위에 관하여 SC와 사무국에 조언하도록 요청하며, 3) CEPA 감독 패널이 결의안 XII.9에 요약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협약에서 CEPA에게 조언 및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그 진척 사항을 SC58 및 SC59에서 보고 하도록 지시하며, 4) 사무국이 CEPA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요청이 있을 때 협약에서 CEPA 조언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패널의 작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5) 당사국들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CEPA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가용 자원을 갖도록 요청했다.

결의안에는 하나의 부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검토의 범위와 양상, 2021년까지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진척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계획 실무그룹의 핵심 활동에 대한 예시적인 일정표(timeline), 그리고 SC와 실무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그룹 회원들의 출장과 전문가 조연을 위한 SC54에서 위임 받은 CHF44,000의 예시적인 예산이 담겨있다.

또한, 실무 그룹은 당사자들로부터의 의견, GWO 결론, 2030 의제와 SDGs 목표, 2020년도에 채택될 예정인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그리고 기타 전지구적인 발전을 고려할 것을 명시 했다.

❖ 협정의 이행, 가시성 및 시너지 강화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사무국, 당사국들, 국제기구파트너(IOPs) 등이 2021년 협약 제 50주년에 대한 집중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국가, 아국가 (sub-national), 지역,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약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2) 당사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해당 국가와 아국가 사이의 효과적인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개발 계획, 기타 부분의 전략, 계획, 그리고 규제에서 습지 생태계 기능과 생태계서비스의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에 관한 시너지 증대를 위해 메커니즘을 수립 또는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3) 사무국, 당사국, IOPs 등이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강화하고 2030 의제의 실현을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다자간환경협약 (MEAs) 중에서 시너지, 일관성, 그리고 효과적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며, 4) 사무국이 SC58에서 기타 MEAs와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계획과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여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5) 당사국들이 국가적 기여 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을 작성 또는 업데이트할 때와 습지 보호와 회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파리 협정에 따라 국내 기후 조치를 추구할 때 그들의 국가 환경 및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며, 6) 사무국이 물과 관계된 지표, 특히 SDG 지표 6.6.1 (습지 규모)에 관한 기타 관련 UN 기구는 물론이고 SDG 지표에 관해 기구 간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하며, 7) 사무국이 적절한 경우 국제적인 포럼에서 지속 개발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 및 SDGs 14 와 15 및 목표 14.2 (해양 및 연안 생태계) 그리고 15.1(지상 및 내륙 담수 생태계)를 포함하여 2030 의제와 SDGs를 다루기 위해 관련되는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며, 8) 다른 MEAs의 당사국이기도 한 당사국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발전시키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협조와 조정 및 협정의 일관성 있는 국가적인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MEAs와 기타 파트너들 사이에서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시너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 2019-2021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Ramsar Regional Initiative, RRI)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하나의 RRI가 공식적인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과 일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 RRI는 COP의 지지를 받거나, 또는 회기 내에 SC의 지지를 받아야하며, 2) RRI는 각 COP의 검토 대상이어야 하고, 3) RRI는 위임사항을 개발하여, RRI 참여에 대한 사무국의 지위를 포함하여, 그들 자체의 절차, 구조, 거버넌스 및 회원에 대한 규칙을 다루어야 하고 COP의 결정 및 결의안과 일치해야하며, 4) RRI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5) RRI는 그들의 지역에서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들 자신의 로고와 이름만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며, 6) RRI는 SC가 승인한 양식에 따라, 차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과 함께, 매년 말에 그들의 작업에 관한 진척 사항과 재무 요약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7) 설립 된지 6년 미만이고 람사르협약 핵심예산 스타트업 펀딩(Start-up Funding)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RRI는 차년도를 위해 제출하는 예산에 지원해야 한다.



[그림 5] 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지역 이니셔티브 부대행사(Ramsar website 2018)

특히 COP는 1) 기존 19개의 RRIs를 COP14까지 협약의 프레임워크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인정하며, 2) 2019, 2020 및 2021년도의 유자격 RRIs에 대한 협약 핵심 예산에서의 재정 지원 수준은 그들의 최근 연례 보고서와 업데이트 된 사업 계획, 그리고 재정에 관한 하위 그룹이 SC에게 보내준 특정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매년 SC가 결정한다고 결의하며, 3) 핵심 예산의 지원을 받는 RRI들은 다른 출처로부터 지속 가능한 재원을 찾기 위해 이 지원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4) 당사국들이 RRI들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기타 잠재적 기부자들이 RRI들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며, 5)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RRI들을 홍보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하고, 6) 당사국들이 지역 정부간, 국제, 비정부 기구, 토착민 기구 및 지역 사회, 그리고 접경지역 하천과 지하수 유역 관련 기구들을 RRI들에 참여 또는 협조하도록 권장하며, 7) 기존의 관련 결의안 및 결정을 검토하여 현재의 결의안 및 관련 결정들과 모순되는 것을 찾아내고, 승인을 위해 폐기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을 SC58에서 RRI 실무 그룹이 제시하도록 사무국의 법률 고문에게 지시하며, 8) 결의안 부록에는 지중해습지이니셔티브 (Mediterranean Wetlands Initiative)의 요청에 응하여 2019-2021년도에 대한 지중해습지이니셔티브를 위한 예산을 포함했다.

❖ 세계 습지의 날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의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 하는 것을 환영하며,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 UNGA)가 람사르협약 채택일인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당사국들이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지지하여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할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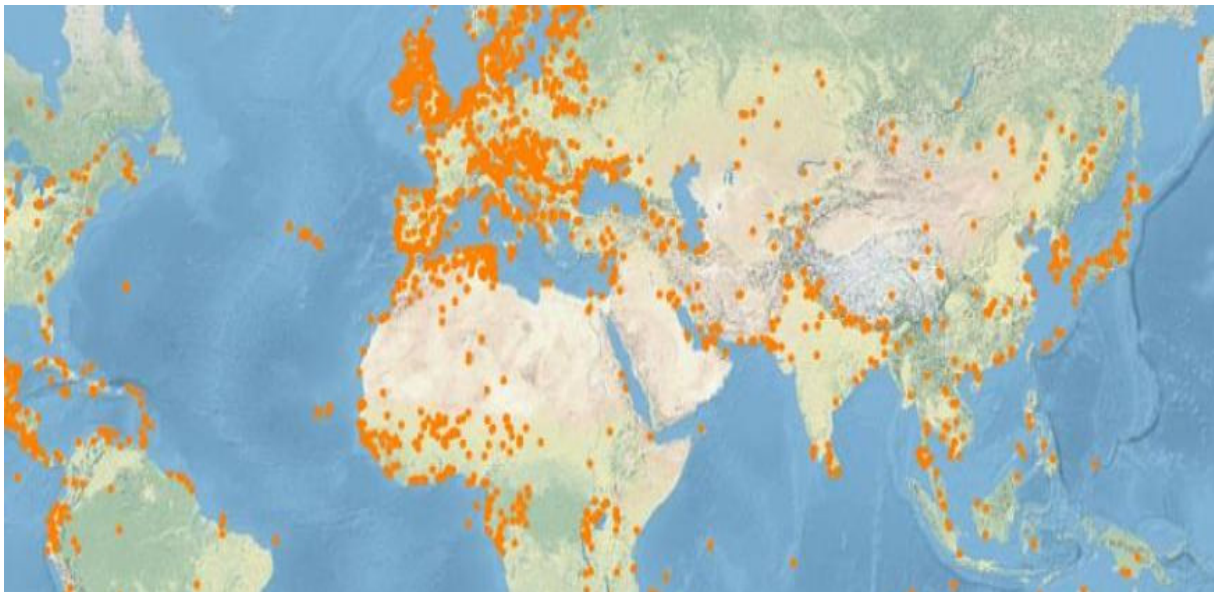
[그림 6] 2018 세계 습지의 날(Ramsar website 2018)

❖ 람사르 사이트 현황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2014년 8월 28일부터 2018년 6월 20일 사이에 당사국들에 의한 131 곳의 새로운 람사르 사이트 지정에 감사하며, 2) 전체 람사르 사이트(2,134)의 69%에 해당하는 1,592개의 람사르 사이트에 대해 6년이 넘도록 람사르 정보지(Ramsar Information Sheets, 이하 RIS) 또는 적절한 지도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3) 지역의 확장이나 축소로부터 발생하는 람사르 사이트 경계의 실질적인 변경도 업데이트 된 RIS로 보고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고, 4) 당사국들의 람사르 사이트 59%가 인간에 의해 생태계 특성의 부정적인 변화 또는 가능성이 큰 변화에 직면한 것을 보고했으나, 42% 미만이 그러한 변화 또는 가능성이 있는 변화의 모든 경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언급하고, 5) 람사르 목록의 변경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나열된, 그들이 지정한 모든 람사르 사이트에 대하여 RIS 또는 지도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국들이 SC57 이전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6) 필요한 모든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관련 당사국들과 접촉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하며, 7)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나열된 당사국들이 최대한 빨리 최소한 매 6년에 한번씩은 RIS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8) 당사국들이 적절한 경우 람사르 사이트 및 기타 습지를 위한 관리 계획의 일부로 적절한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를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권장하며, 9) RIS와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의 직접적인 데이터베이스 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하도록 했다. 결의안에는 부록1의 몽트뢰 목록*(Montreux Record)이 포함되어 있다.

* 몽트뢰 목록: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등록된 습지로서 기술 개발, 오염 등 인간 활동에 의해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습지 목록



[그림 7] 전 세계 람사르 협약 습지 사이트(Ramsar website 2018)

❖ 람사르 자문단(Ramsar Advisory Missions, RAM)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당사국들이 그들의 영토 내에서 보다 빈번하게 RAM을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며, 2) RAM이 심의할 때 다른 람사르 사이트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사이트를 위한 RAM의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사무국에 지시하며, 이 경우 RAM 보고서는 다른 많은 습지에 유용하거나,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에

관한 기존의 지식에 RAM이 가치를 더할 수 있으며, 3) RAM을 위한 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하고, 4) 당사국의 람사르 국가 연락담당관들은 RAM이 다른 협약의 미션을 고려하여 다른 협약 국가 연락담당관들과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며, 5) 당사국 등이 자발적으로 RAM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 했다.

또한 COP는 사무국에게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1) RAM 요청 대응에 있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협약의 미션과 중복을 피하고, 2) 지역 전문지식이 RAM팀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며, 3) 당사국들이 그들의 노력에 몽트뢰 목록에 있는 사이트들과 생태 특성의 부정적 변화에 관한 보고서가 접수된 사이트들을 관리하도록 조언하며, 4) 몽트뢰 목록에서 람사르 사이트 제거에 대한 모든 당사국들의 요청을 신속히 STRP에게 제출하고 협약 당사국과 SC에게 그런 요청의 처리에 관한 STRP의 권고를 공지하도록 요청했다. 결의안에는 하나의 부록이 있으며 여기에는 사무국이 작성할 RAM에 대한 운영 지침에 포함될 주제 목록이 담겨있다.



[그림 8] 람사르협약 자문단 활동(Ramsar website 2018)

❖ 과학과 기술 측면에서의 협약의 향후 이행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지난 3년 동안 산출된 STRP 결과물을 환영하며, 2) 적절한 경우 당사국들 등이 이를 이용하도록 촉구하고, 3) GWO를 포함하여 STRP 결과물을 국제기구파트너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CEPA 도구를 활용할 것을 요청하며, 4) 2019-2021년의 3년간에 대한 STRP를 위한 우선순위 주제 관련 작업 분야, STRP 회의 및 다음 3년을 위한 절차에 참관인으로서 참가하는 단체와 기구들의 개정된 명단, 그리고 IPBES(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 이하IPBES)에게 제안을 제출하기 위한 지침을 승인하며, 5) SC57에서의 승인을 위해 2016-2018년 사업계획에서의 높고 낮은 미완성 우선순위와 당사국들이 이행을 위해 노력중인 전략계획 요소를 포함 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간결하고도 달성 가능한 2019-2021년 사업 계획을 개발하도록 STRP에 지시하며, 6) 제출된 IPBES와 관계된 제안을 STRP가 검토하고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C와 사무국에 조언을 제공하며 적시에 모든 결과물을 IPBES에 제출하며, 7) 교훈을 기반으로, COP를 위한 산출물과 결과물을 개발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시간을 극대화 하는 2019-2021년의 3년간에 걸친 STRP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사무국과 STRP가 개발하며, 8) 3년 기간 중 SC58부터 시작하여 두번째 SC 회의와 함께 두번째 STRP 회의의 일정을 잡고, COP14의 주최 지역 또는 국가에서 기금의 가용성에 따라 세번째 STRP 회의를 개최하며, 당사국 등에게 지원 제공을 요청하여 당사국 담당관 및 STRP와 CEPA 담당관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사무국이 수행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4개의 부록을 담고 있다. 부록1에는 2016-2018년 동안 생산된 STRP 산출물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록2에는 2019-2021년 동안 STRP 우선순위 주제 관련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부록3은 2019-2021년 3년 동안 STRP 회의 및 절차의 참관인으로서 참가 초청을 받은 단체 및 기구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4는 향후 업무계획을 위해 IPBES에 대한 요청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 기후변화 조절을 위한 람사르 사이트로서의 이탄지 식별에 관한 지침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결의안 부록1에 있는 이탄지 식별 및 지정을 위한 개정된 지침을 채택하며, 2) 당사국들이, 적절한 경우, 잠재적인 이탄지 람사르 사이트를 고려할 때 개정된 지침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3) 당사국들이 사이트를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원격탐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결의안에는 2개의 부록이 있다. 부록1은 이탄지의 식별과 지정을 위한 개정된 지침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결의안 XI.8에 의해 채택되고, 2012년에 개정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의 향후 확대를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와 지침의 부록 E2를 대체한다. 부록2는 덴마크 릴르 빌트모스(Lille Vildmose)의 사례를 이용하여, 추가 논거의 하나로, 기후 완화 관련성을 이용한 람사르 사이트로서의 이탄지의 지정에 대한 사례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 훼손된 이탄지의 복원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당사국들이 그들의 국가 보고서에 결의안 VIII.17(이탄지에 관한 국제적인 조치를 위한 지침) 및 XII.11(이탄지, 기후변화, 그리고 현명한 이용)의 이행에 관한 진척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2) 이탄지를 가진 당사국들에게 세계 이탄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3) 아직 람사르협약 지침이 다루지 못한 이탄지 유형을 위한 복원 방법의 현실적인 경험에 대해 추가로 상세히 설명할 것을 STRP가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4) SC57에서의 발표를 위한 사업계획 개발을 위해, 결의안 VIII.17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통합된 접근법에 기초하여 복원 방법의 현실적인 경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탄지 복원 프로젝트의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그리고 다중기준 분석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이탄지 복원에 대한 보고를 위한 템플릿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STRP에게 요청하며, 5) 그런 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이 이탄 관련 정보와 사례연구를 제공하고, 결과물을 전파하며, 진척상황을 COP14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하며, 6) 당사국들이 이탄지 복원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개발 및 적용하고 이탄지에 위해가 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시키기 위한 옵션을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COP는 당사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권장했다. 1) 일반적인 이탄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은 물론 훼손된 이탄지의 복원 및 재습윤(rewetting)에 관한 입법을 개발 또는 개선하고, 2) 기존의 이탄지를 보전하고 그들 영토 내의 훼손된 이탄지를 복원하며, 3) 이탄지 복원과 재습윤 방법에 관한 경험 모음집 제작에 기여하고, 4) 배수 기반 이탄지 농업 및 임업으로부터 최선의 관리 옵션으로 확인 되는 경우, 그리고 과도방목(overgrazing) 및 건설과 같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탄지의 이용을 떠나, 팔루지컬쳐**(paludiculture)에 뒤이어 재습윤으로의 변경을 격려하는 것을 고려하며, 5) 이탄지 유형, 사이트의 현재 생태학적 상태 및 재습윤 후의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여, 팔루지컬쳐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그리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양보하지 않는 복원을 위한 최선의 토지 이용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습윤과 팔루지컬쳐가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며, 6) MEAs 사이에서 협력과 시너지를 조성하고 이탄지 보전, 복원, 그리고 현명한 이용에 대한 MEAs의 공동 선언을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7) 그들의 국가 상황 내에서 적절한 경우, 탄소의 인위적인 배출을 줄이고 제거를 늘리는 이탄지 보전 및 복원 수단을 추구한다.

** 팔루지컬쳐(paludiculture): 이탄지에서의 습윤 농업 및 임업



[그림 9] 이탄지의 탄소 저장 기능(Ramsar website 2018)

❖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 가능한 관리 촉진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를 가진 당사국들에게 다음사항을 권장했다. 1) 습지를 위한 데이터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이들 연안 습지의 탄소 저장과 플렉스를 예측하고, 그들의 국가 온실가스 재고를 업데이트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시민 과학과 토착 지식 포함), 이들 생태계를 보여주며,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2) 람사르 사이트와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타 습지 사이트들 가운데서 이들 생태계의 가치와 혜택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3)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STRP의 개발된 또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적용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들 생태계의 보전, 복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계획을 개발 및 수행하고, 4) 이들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 완화하고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방출과 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안 블루 카본 생태계를 유지·복원한다.

* 블루카본(Blue carbon):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또한 COP는 사무국에 다음 사항들을 요청했다. 1) 이해관계에 있는 협약 당사국들이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 관리에 관한 그들의 필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조사하고, 2) 이해관계에 있는 협약 당사국들이 UNFCCC와 파리협정에 따라 지침을 적용하고, 이들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며, 당사국들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역 훈련 과정의 수립을 촉진하도록 능력을 배양한다.

COP는 관련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에 일치하여 최우선 순위로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를 포함한 기후변화와 습지에 관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STRP에게 요청했다. 1) 참여를 희망하는 당사국들의 람사르 사이트에 걸친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의 탁상연구(desktop study)를 수행하고, 2)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에서 탄소 저장량,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탄소 동태 변화의 지역적인 모델링 검토 및 분석, IPCC 습지 부록의(Wetland supplement) 향후 업데이트를 위해

IPCC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3) 보전과 복원을 위해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의 우선순위 부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4) 람사르 사이트에서의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 보전, 복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존 지침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한다.

결의안에는 모든 당사국들이 블루카본에 대한 결의안의 정의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술하는 각주를 담고 있거나. - “연안[예: 맹그로브(Mangroves), 염습지(Saltmarshes) 및 해초류(Seagrasses)] 및 해양 생태계의 살아있는 유기체에 포집되어 생체량과 퇴적물(Sediments)에 저장된 탄소” - 완화 보고 및 회계 협정을 다루기 위한 권한이 있는 포럼으로서 협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하는 각주를 담고 있다.

❖ 문화적 가치,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습지에서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기후변화 목표, 혁신적인 인프라 및 토지 이용 계획의 달성에 IPLCs(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환경,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2) ①증가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는데 있어 문화적 가치, 전통 지식, 혁신, 그리고 IPLCs의 관행을 보호, 지지 및 촉진하고, ②IPLCs의 지식을 습지를 위한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책지침과 거버넌스를 촉진시키도록 당사국들을 격려하고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요청하며, 3) ①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서 IPLCs의 전통적인 지식을 보전 및 전파를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추구하고, ②관련 국가 및 지역 정책의 기획과 이행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법의 일부로 습지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 지식 및 관행을 계속해서 촉진시키며, ③산림 황폐화와 벌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속 가능한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그리고 습지와 이탄지에서 기타 생계 활동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IPLCs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당사국들을 격려했다.

또한, COP는 1) 당사국들이 ①COP14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 지식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한 습지의 회복력 상승에 기여하는가를 입증하는 사례연구를 포함시키고, ②UNFCCC에 따라 수립된 지역공동체 및 토착민의 플랫폼을 고려하며, ③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 현재 해결책의 이행을 고려하며, 2) SC57에서 심의 될 예정인 네트워크를 위한 (권한)위임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STRP가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일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며, 습지 문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메커니즘의 하나로 람사르 문화 네트워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3) STRP가 습지를 위한 습지의 간편 문화 목록(Rapid Cultural Inventories for Wetlands) 지침의 검토와 개정을 고려하고, 4) 사무국은 습지보호 및 관리에 있어 습지의 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했다.

❖ 지속 가능한 도시화, 기후변화, 그리고 습지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당사국들이 도시 및 도시 근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활동을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 다음의 5가지 항목을 위해 기술적인 지침을 개발할 것을 STRP에게 요구 했다. ①기후 시나리오, 기후 모델링, 그리고 기후변화 분석 기법을 이용한 도시 및 도시 근교 람사르 사이트의 설계, ②건설된 도시 및 도시 근교 수(水)처리 습지, ③오염 부하 용량에 따라 도시 습지로 배출되는 오염 부하에 대한 한계 설정, ④도시 및 도시 근교 개발 또는 람사르 습지 인근 개발을 위한 최고 품질의 운영 절차 제공, ⑤도시 및 도시 근교 습지와 그 완충 지대의 현명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

또한 COP는 당사국들이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1) 도시 및 도시 근교 습지를 위한 관리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습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2) 원래의 습지식생, 토양, 그리고 이와 연관된 미생물 군집이 관련된 생체모방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처리 시스템을 통합시킴으로써 건설된 도시 및 도시

근교 습지 서식지 증대 활동을 수행하며, 3) 도시 및 도시 근교 습지 목록을 작성하고, 4) 도시 및 도시 근교 습지의 보전에 관한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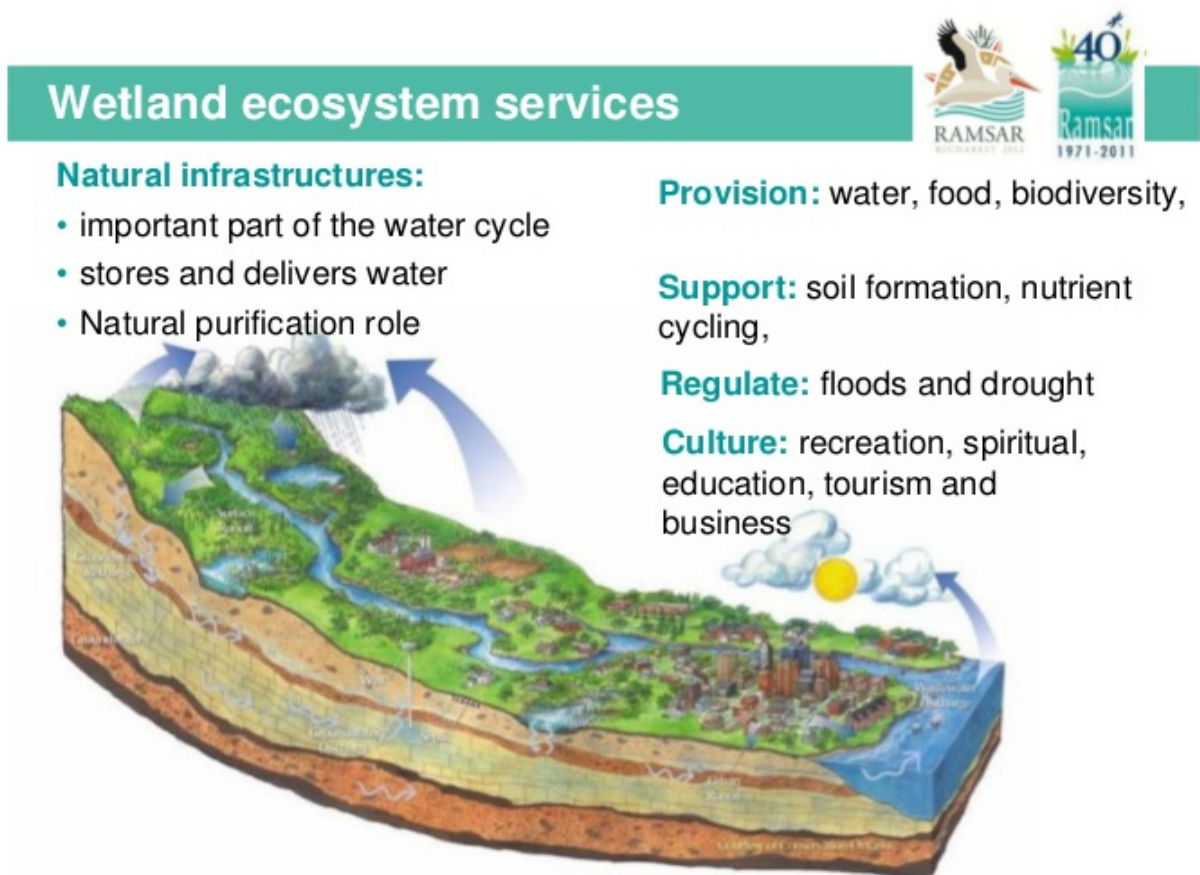


[그림 10] 제주도 습지도시인증 기념사진(IISD ENB 2018)

❖ 습지 생태계서비스 간편 평가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간편 평가 접근법은 습지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것이며, 2) 당사국들은 그 접근법을 환영하고, 3) COP는 람사르 사이트의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자발적인 평가 접근법의 한 가지 사례로서 부록1을 인정하며, 4) 당사국들에게 IPBES의 평가 및 기타 접근법에 기초하여 과학 및 기술 발전을 위한 방법론 개발을 요청하며 5) IPLCs를 포함시킨 참여 접근법의 장기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6) 당사국들이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더 폭넓게 부각시키기 위해 람사르사이트 관리 당국이 람사르 의사소통 툴을 이용하도록 촉구할 것을 권장하며, 7) 당사국들이 그들의 비전에 따라 습지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또는 모든 유사한 접근법의 간편 평가를 위해 본 접근법 등을 활용 하고 집중할 것을 권장했다.

부록1은 두 가지의 별첨과 함께 간편 평가 접근법의 개발과 적용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별첨1은 생태계서비스 분야 평가 시트의 간편 평가를 담고 있다. 별첨2는 생태계서비스 접근법의 간편 평가 및 지표 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습지 생태계서비스의 초기 목록이 담겨있다.



[그림 11] 습지 생태계서비스-Claudia Renerol(람사르협약 사무국)

❖ 성(Gender)과 습지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1) 전략 계획의 중간 검토를 위한 절차의 일부로, COP는 당사국들이 협정 이행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하며, 2) STRP는 성 인지적 관점을 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습지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대한 혜택을 분석하고, 성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며, COP에게 제안을 제출하고, 3) 사무국은 ①성 문제에 관한 선임 전문가를 지정하여 양성 평등과 주류화에 대하여 모든 직원을 위한 필수 교육을 실시하며, ②원대한 목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COP14에서 보고하고, ③요청 시 그들의 국가 보고서에 성별 자료와 성 분석의 통합을 개선하기 위한 그들의 국가 통계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당사국들을 지원하며, ④성과 관계된 성별 정보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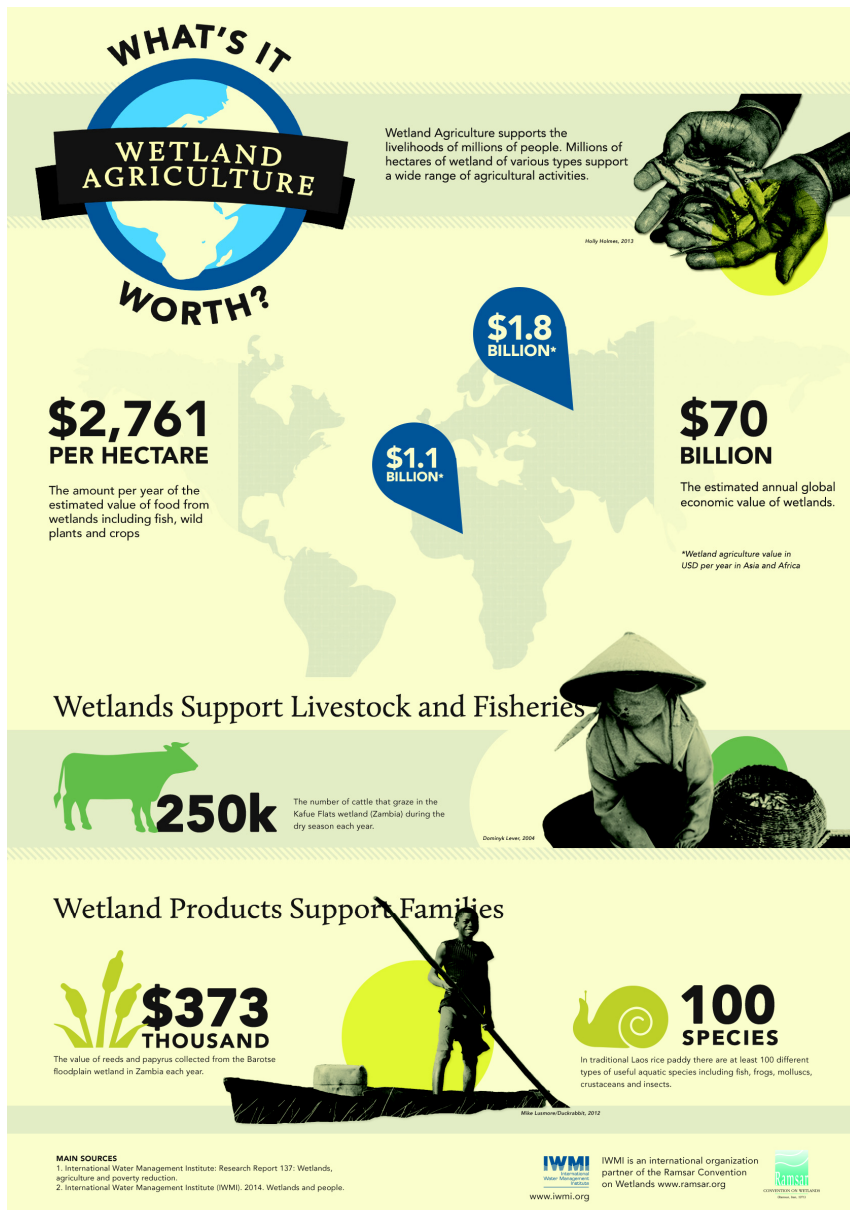
COP는 다음과 같이 사무국이 당사국들을 지원할 것을 권장했다. 1) 협약 이행에, 특히 전략 계획과 CEPA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하여,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하고, 자원 및 비자원을 포함하여 사무국이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하며, 2) 각 지역 내에서 그리고 협약의 기구들 내에서 대표들 사이에 균형 잡힌 성별을 고려하며, 3) SDGs 정보를 감안하여 그들의 국가 보고서에 성별 자료와 성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COP는 당사국들에게 1) 사무국과 협력하여 성과 습지에 관련된 문제를 교육하고 인식을 높이며, 람사르협약 회의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이루기 위해 대표단들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며, 2) 국가대표단에서 그리고 공식·비공식 협상 그룹의 의장·진행자로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를 확대 하는 것을 고려 할 것을 요청했다.

❖ 습지에서의 농업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다음 사항을 권장했다. 1) 영양소와 유기물의 대량 유출을 야기하는 최대 유출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습지 배수를 막고 대수층을 적절히 관리하며, 수분 보유 시간을 향상시키고, 지역 대기의 물 순환을 되살리며, 기후변화 완화와 가뭄의 부정적인 영향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습지 보전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형태를 개발하고, 2) 습지의 생태계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편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전통적이고도 혁신적인 이용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습지의 새로운 이용을 모색하고 촉진하며, 3) 습지, 기타 지표 및 지하 수원의 공동 관리를 위한 지침을 지원하고 개발하며, 4) 농업 생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과 정책을 검토 및

개선하며, 습지의 건전성과 지역민 생계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습지와 그들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며, 5)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습지 관련 생태계의 훼손 방지를 위한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조정하며, 6)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에 고도로 집약적인 농업 경관 내의 습지가 필요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효과성과 포괄성을 위한 관련 국내 입법, 규제 및 습지 보호 정책 프레임워크를 평가한다.



[그림 12] 습지에서 농업의 가치(국제물관리연구소 2014)

또한 COP는 STRP에게 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습지에 관한 농업 제도의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작성 및 검토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습지 온전성을 유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습지 이용의 우수 사례를 문서화하고, 2) 온전한 농업용 습지와 1970년대 이후 농업용 토지 이용으로의 전환을 통해 손상 및 파괴된 습지의 규모에 관한 자료 및 개요 제공을 요청했다.

❖ 조간대 습지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식지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연안 습지와 다른 이니셔티브, 보전체계, 사이트 지정, 관리, 해결책, 복원, 그리고 연안습지에 대한 인식 변화의 조율을 다루고 있다.

다른 이니셔티브 및 보전체계와의 조율에 관해 COP는 1) 당사국들에게 기후 완화를 위한 그들의 국가 정책과 전략에 그들의 연안 생태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생태계 기반 적응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촉진할 것을 권장하며, 2) 기금의 가용성을 전제로, 연안 생태계의 보호, 관리, 그리고 복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MEAs, 정부, 민간 부문, 관련 기구, 그리고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다자간 글로벌 연안포럼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고, 3) 당사국들과 STRP가 제안된 연안포럼에 적극 참여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했다.

사이트 지정에 관해 COP는 1) 당사국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간대 습지와 생태적으로 연계된 서식지를 긴급히 지정하고, 2) 가치가 있는 조간대 사이트가 있는 당사국들은, 다른 주요 사이트들과 잠재적으로 생태적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접경 사이트를 포함하여 이들을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며, 3) 조간대 람사르 사이트 경계에는 이동성물새와 기타 관련 생물에게 중요한 생태계 전체를 포함시킬 것을 당사국들이 보장하고, 관련 람사르 사이트의 경계를 검토 및 확대 하도록 요청 할 것을 권장하며, 4)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및 서아시아동아프리카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국가(Range State)인

당사국들이 물새의 개체군 크기 추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과 협력을 강화하고, 5) 사무국과 STRP가 후속 COPs를 위해 새로운 조간대 습지 람사르 지정의 범위를 요약하도록 요청했다.

자원의 가용성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안 서식지(Working Coastal Habitats)”의 보전, 현명한 이용, 그리고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제안된 연안 포럼에 따라 다른 MEAs의 과학 부속기구와 조율할 것을 고려하도록 COP가 STRP에게 요청했다.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COP는 당사국에게 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위해 그들의 조간대 및 연계 연안 습지의 국제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예방적 접근의 하나로 생물다양성을 위해 우선순위에 있는 사이트에서 갯벌 보전을 재고하고, 2) 조간대와 연안 습지에 영향을 주는 개발을 고려할 때 습지 손실을 피하고, 완화하고, 그리고 보상하기 위한 람사르의 통합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며, 3) 조간대 습지와 생태적으로 연계된 서식지를 전환시키기 위해 왜곡된 인센티브를 되돌리며 지속 가능한 습지 친화 조치를 이행하고, 4) 환경적 흐름(environmental flows)에 관한 람사르 지침의 이행을 통해 댐 또는 기타 물 조절 구조물로부터의 적절한 유출 조절을 통해 강 유입량으로부터의 연안퇴적물과 물 수요가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5) 연안 보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6) 아라비아 반도의 기타 관할권을 가진 국가(Range State)들과 함께 지역의 연안 습지 상태 평가를 지원하며, 7)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연안 지역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연안 및 해양 공간 계획 틀을 이용하고, 보전 목적을 홍보할 것을 권장했다.

복원과 관련하여, COP는 연안 침식 및 해수면 상승이 조간대 습지와 생태적으로 연계된 서식지의 손실을 초래하는 지역에서 당사국들이 연안 보호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권장했다.

연안습지에 대한 인식변화에 관하여, COP는 1) 대중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습지 및 생태적으로 연계된 서식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당사국들이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2) 관심 있는 당사국 등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물새 및 물새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권장하고, 3) 2024년 이후 람사르 전략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조간대 습지 및 생태적으로 연계된 서식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당사국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하며, 4) 조간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이전 결의안 목록 문서를 첨부했다.

❖ 소규모 습지의 보전과 관리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국가 및 지역 정책 알리를 통해, 그리고 소규모 습지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물 관리 계획 또는 공간 계획과 같은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소규모 습지를 위협하는 인간이 유발한 압력을 당사국들이 긴급히 다룰 것을 권장하고, 2) 과학에 기반한 목록, 국가 습지 전략, 그리고 국가 및 지역 토지 이용 계획에 소규모 습지를 포함시킬 것을 당사국들에게 권장하고, 3) 소규모 습지의 효과적인 관리, 회복, 그리고 보전 이행을 목표로 하는 추가 재원을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며, 4)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습지와 소규모 습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고, 5) 각국의 람사르 국가 보고서에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는 소규모 습지의 보전에 관해 보고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고, 6) SC57에서의 발표를 위한 제안된 사업 계획을 개발하는데 소규모 습지의 식별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소규모 습지의 다양한 가치, 특히 경관관리와 기후변화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다양한 상이한 입법, 정책, 그리고 기타 모범 실무 접근법을 강조하며 각 람사르 지역의 대표 사례를 끌어내도록 STRP에게 요청했다.

❖ 서아시아의 습지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서아시아의 당사국들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협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맥락 안에서 기존의 협력 및 지역 이니셔티브를 활용할 것을 고려하며, 2) 지역 내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홍보하고 그들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역 내 당사국들, IOPs 및 관련 기구들 사이의 더 많은 협력을 권장했다. 또한, COP는 1) 서아시아 지역의 당사국들이 습지 생태계서비스의 복원을 수행할 것, 2) 중부 및 서아시아 람사르 지역 센터가 현행 결의안의 조항을 추적하고 COP에게 이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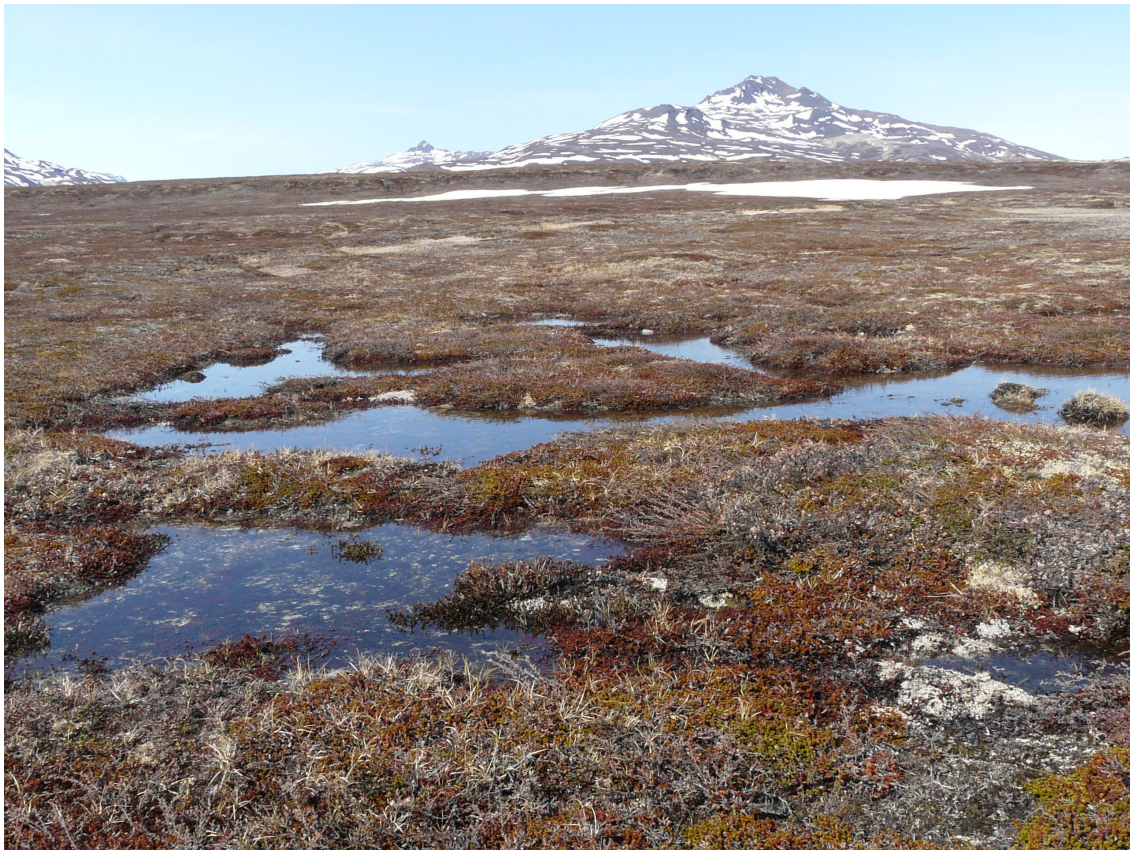
❖ 북극 및 아북극의 습지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1) 습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극 및 아북극 습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2) 습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핫스팟(Hotspot) 분석기법을 포함하여 북극 및 아북극 습지의 상태와 람사르 사이트 네트워크와 습지를 포함한 기타 보호 지역 사이의 차이에 대한 평가 수행, 3) 북극 및 아북극 습지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그리고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증진, 4) 보전 가치가 높은 람사르 사이트와 기타 습지에 대하여, COP는 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습지의 유형과 중요한 연결지점이 되는 서식지를 새로운 람사르 사이트로 관련 당사국들이 지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습지에 대한 영향의 완화 및 회복에 관하여, COP는 관련 당사국들에게 1) 북극 및 아북극에 있는 습지의 복원 조치가 서식지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놓고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2) 개발 프로젝트, 운송, 그리고 관광 활동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습지의 생태계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된다는 것을 보장하며, 3) 북극 및 아북극 지역에 가축 및 반가축(semi-domestic grazing) 방목 가축이 있는 경우, 그 무리의 개체군 크기가 야생 초식 동물의 개체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하며, 4) 북극 및 아북극 지역에서 기존의 침입외래종을 관리하고 기존 및 새로운 침입외래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할 것을 권장했다.

국제적인 협력에 관해, COP는 람사르협약에 따른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를 UNFCCC와 공유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했다.



[그림 13] 스웨덴 람사르 습지(Ramsar website 2018)

❖ 강화된 바다거북 서식지 보전과 핵심 지역으로서 람사르 사이트 지정

COP는 최종결의안에서 바다거북 동지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인간과 바다거북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모범 관리사례 발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사국들에게는 다음 사항들을 권장했다. 1) 번식 및 섭식지역 색인을 확인하고 개체군이 모니터링 되고 있음을 보장하고, 2) 색인된 번식

및 습식지역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공표하고, 특히 해양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여 람사르 사이트 지정을 강화하고, 3) 이들 사이트를 위한 관리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하고 이 사이트 관리 계획을 연안 관리 계획과 통합하며, 4) 네트워크 상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관련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5) 인식 증진을 위해 지역공동체, 이해당사자, 그리고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하여 바다거북 서식지가 포함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대안 생계 육성을 통해 밀렵 등과 같은 행위를 중단하며, 6)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기 보다는 지역 이니셔티브 및 기존의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강화를 추천하며, 바다거북 보전 조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람사르 사이트 관리계획을 검토한다.



[그림 14] 지구습지전망 보고서 발표-람사르 사무총장(IISD ENB 2018)

또한, COP는 당사국들이 바다거북과 그들의 습지서식지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관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며, 1) SC57에서의 발표를 위해 기후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간편평가방법의 개발을 STRP가 고려 할 것, 2) 람사르 사무국이

IAC(Inter-Americ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Sea Turtles), CMS(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사무국들과 관련 업무협약을 토대로 람사르 사이트에서의 바다거북 보전을 강화하고, 람사르 사무국은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람사르 사이트 관리 계획에 바다거북 보전 조치를 포함 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역 별 연안 및 바다거북 서식지를 가진 기존 람사르 사이트 목록이 결의안에 첨부되어 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습지는 수원과 물의 정수 장치로, 홍수와 가뭄으로 부터의 보호장치로, 식량, 섬유, 그리고 연료 공급원으로, 생물다양성의 핫스팟(Hotspot)으로, 천연 탄소 저장 시설로, 그리고 기후 및 수문체제의 조절장치로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습지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 “1970년 이후 산림 손실의 3배인 습지의 35%가 손실되었으며, 내륙 습지 생물종 개체군의 81%와 연안 및 해양 생물종의 36%가 줄어들었다.”

습지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압박을 다루는 것의 긴급성은 COP13 동안 반복해서 강조되었으며, COP13은 다른 분야에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주류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룸으로써 협약의 범위,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COP12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그의 17개 SDGs 및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되었다. 이들 협약이 제공하는 계기는 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SDGs, 파리협정 및 기타 MEAs와 연계함으로써,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확장 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OP13을 앞에 두고, 일부에서는 협약과 사무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전의 관리에 대한 문제와 결부된 이전의 COP에서 조직상의 문제들은 람사르협약이 여러 국가로부터 다시 재조명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한 대규모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를 생각하게 했다.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사무국의 근본적인 개편은 대다수의 대표단들에게 미래에 대해 보다 희망을 주었다.

GWO는 세계의 습지 상태 및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습지 상태의 스냅사진, 추세, 그리고 습지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비록 습지가 아직도 그린란드 규모에 준하는 면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습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습지의 질도 악화되고 있으며 많은 습지 의존 생물종도 높은 수준의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GWO는 수질의 부정적인 추세도 강조하고 습지 생태계서비스 역시 막대해서 육지 생태계의 서비스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GWO는 나아가 국가, 국제, 유역, 그리고 사이트 차원에서 이용 가능한 광범위한 효과적인 습지 보전 옵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훌륭한 거버넌스, 지식 생산, 관리, 투자, 그리고 대중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WO는 협약의 개요와 기타 MEAs,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과의 연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감명적인 반응에 의해 입증된 것과 같이 이미 대중의 인식을 높인바 있다.

람사르협약은 기후변화와 습지(기후변화협약), 습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협약, IPBES)등 다양한 국제협약들과의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환경생태분야 국제협약·기구들에서 다루는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수행되고 있다. 향후 국제협약·기구에서 예정된 기후변화와 습지, 습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대응을 위한 국내 대응 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람사르협약에서 수행한 GWO처럼 한국에서도 한국 습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위한 한국습지전망(가칭, Korea Wetland Outlook) 발간을 통해 국내 환경정책을 지원하고, 글로벌 습지 이슈 대응을 위한 전략 기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NIE-IR 19-02(통권 7호)

NIE Issue Report

발 간 일	2019. 7.
발 행 인	박용목 원장
편 집	연구정책부
발 행 처	국립생태원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인 쇄 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일자리사업장 (02-2272-0307) Design by PONT(blue-pont@daum.net)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책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nie.re.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3. 문의: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 연구정책부(전화 041-950-5361)

